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01. 8. 23.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01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8. 22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홍기)

가. 제안이유

○ 2001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에 따른 유사·중복·기능쇠퇴 분야의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관
련 조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구명칭 부여에 관한 명확한 개념 도입을 위한 명칭변경

- 기획조정실 ⇒ 기획관리실
- 문화진흥국 ⇒ 문화관광국
- 자치행정과 ⇒ 행정과
- 재무과 ⇒ 세무회계과

○ 기구의 신설 및 폐지

- 신설 : 3개과 및 1개사업소

(첨단산업과, 교통과, 도로과, 건설종합본부)

- 폐지 : 5개과 2개사업소

- 도 : 정책연구담당관실, 자원관리과, 도로교통과,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증평 : 기획실, 도시과

○ 한시기구·정원의 폐지 : 개발사업소, 민주화보상, 지방이양정원 등

○ 다른조례의 개정 : 기구의 명칭변경사항 및 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외 27건)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금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에 따른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기
능을 통·폐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을 보강·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기구 명칭에 관한 명확한 개념 도입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기획관리실』로, 『문화진흥국』을 『문화관광국』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명칭 변경하고,

첨단산업과, 교통과, 도로과 등 3개과와 건설종합본부를 신설하고,

도의 3개과 2개 사업소(정책연구담당관실, 자원관리과, 교통도로과와 개발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와 증평출장소의 2개 실·과(기획실, 도시과)를 폐지하는 것이며,

또한, 2002.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개발사업소의 정원 19명과, 2002. 6.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를 위한 정원 2명,

그리고, 2003. 12. 31일까지인 지방이양 업무추진 전담을 위한 정원 1명 등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기구의 명칭변경과 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이번 구조조정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1, 2단계로 구분,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고, 중앙 또는 의회의 지적사항과 실·국에서 요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조례 제8조 경제통상국 분장사무 중
 -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업무로 구분되고 있으나
 - 기술지원 업무는 종전 기업지원과의 기술진흥 담당업무를 포괄하는 사항으로 기술지원 업무가 첨단산업과로 이관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기술”지원 업무는 삭제 또는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부칙 제2조 제25항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과 무관한 내용일 뿐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동조 제25항에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을 삽입하여 동 조례 제2조 제2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99년 9월 구조조정시 신설한 정책연구담당관실의 폐지와 통합한 교통도로과를 시행 2년 만에 원래대로 분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근시안적인 행정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개정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의 개정과 관련,

구조조정 시 반영하기로 한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종자생산시험장과의 일원화 계획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자치행정과의 명칭변경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기획조정실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2조 제11항 중 자치행정과 명칭변경 부분 삭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 부칙 제2조 제12항 삭제하며,
- 부칙 제2조 제25항 수정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안을 삭제하고,
→ 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 제2조 제2항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1. 8. 22.

제 안 자 : 유주열 의원외

1. 수정이유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자치행정과의 명칭변경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기획조정실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과 관련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부칙 제2조 제11항 중 자치행정과 명칭변경 부분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 부칙 제2조 제12항 충청북도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안을 삭제하며,
- 부칙 제2조 제25항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안을 삭제하고,
- 부칙 제2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충청북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조례중 제2조 제2항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신설함.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 제11항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제12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제25항을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생략)	제1조(시행일)(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⑩(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⑩(생략)
<p>⑪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u>하고, 동조제5</u> <u>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u> <u>장”으로 한다.</u></p>	<p>⑪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p>
<p>⑫ 충청북도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p>	⑫ (삭제)
⑬~⑯ (생략)	⑯~⑲ (생략)
<p>⑳ 충청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 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3의 제9호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p>	㉑ (삭제)
㉒ (신설)	<p>㉓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p>